

## < 꽃다운친구들 사업 휴업에 관한 내규 >

###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꽃다운친구들(이하 꽃친)이 내부적 요인이나 외부적 환경을 사유로 기존 사업을 상당기간 멈추고 주요사업을 재기획하거나 실행조직을 재구성 해야하는 필요가 있을 때, 휴업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근거

1. 본 규정의 근거는 꽃친 정관 제 16 조(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꽃친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기구이다), 보칙 제 24 조(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및 부칙 제 2 조(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일반적인 관례, 내부 규정 등에 따른다.)이다.
2. 꽃친은 교육기관 등의 휴업이나 휴교, 언론방송 등의 휴간이나 휴방, 노동조합의 휴면 등에 해당하는 휴업에 대한 정관 상의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내부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중 단체를 운영하도록 한다.

### 제 3 조 사유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운영위원회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휴업을 결의할 수 있다.

1. 국가적 사회적 재난의 발생과 지속
2. 대표와 사무국 상근 직원 모두의 유고가 3개월 이상 지속
3. 시설이나 재정 등의 심대한 손실
4. 법령 개정 등에 의한 사업지속의 위기

### 제 4 조 기간

1. 휴업 기간은 2년 이내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소정 기간 중 휴업 사유가 해소되면 제 9 조의 절차를 통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
3. 소정 기간 내 휴업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시 1년 이내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후에도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해 해산을 결의한다.

### 제 5 조 고지

1. (시한) 운영위원회의 결의 후 60일 이내

2. (대상) 전 회원 및 후원자
3. (방식) 홈페이지 게시 및 송달 가능한 문자, SNS, 전자우편, 우편 등을 통한 개별 연락
4. (내용) 휴업사유, 기간, 휴업 전까지의 사업 및 재정보고, 휴업 중 운영대책, 후원금 및 회비의 모금 중단 등이 포함된 집행부의 설명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등

#### 제 6 조 휴업 기간 중의 운영

1. 운영위원회는 제 7 조의 사업을 위해 회원 중에서 약간 명의 실행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휴업기간 중에는 유급 상근 직원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7 조 전환기 사업

운영위원회는 약간 명의 실행위원들과 함께 휴업 중에도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휴업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인력 양성, 모금 기획, 법령 연구 등등
2. 목적사업 재개를 대비한 환경조성 사업: 부모 상담, 협력기관 탐방, 회원 토론 등등
3. 대내외 소통을 증진하는 사업: 소식지 발행, 단행본 발간(인쇄물 또는 디지털버전) 등등
4. 기타 정관 2 조와 3 조 상의 목적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회원들의 자발적 사업 일체

#### 제 8 조 재정

1. 통상적 사업을 위한 정기후원금 또는 회비는 휴업고지와 동시에 모금을 중단하되 행정적 사유로 3 개월 내외의 경과기간을 둘 수 있으며, 자발적 비정기 후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령한다.
2. 전환기 임시사업에 참여하는 회원 등이 분담하는 소정의 참가비를 책정할 수 있다.

#### 제 9 조 종료

1. 기 고지된 휴업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운영위원회는 휴업의 종료를 결의할 수 있다.
2. 재적회원 1/2 이상의 서면요청으로 임시총회가 소집되어 휴업기간 중에도 회원들의 총의로 휴업의 종료를 결의할 수 있다.
3. 종료 후 운영위원회는 전환기 사업 및 예산집행 등에 대해 이후 총회에서 통상적 형식을 갖추어 공식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부칙 =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을 결의한 직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정일 2023 년 3 월 31 일